국제기준등 제·개정안 검토 요청 관련 처리 절차(제6조 관련)

담당	세부 업무	기 한
국토교통부 (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)	국제기준등 제·개정 검토 요청 관련 공한 접수 및 SMIS에 등록 ↓ SMIS를 통해 담당 부서에 배정	공한 발행 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
각 기관 (담당부서장)	개정안 검토(국내여건, 조치필요사항 등) 및 필요 시, 관계기관/업계 의견조회 및 협의 ↓ 최종 검토 결과를 '별지 제1호서식' 및 '별지 제2호서식'에 작성 ↓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공문으로 최종 검토 결과* 제출 *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	개정안 검토 의견 회신 기한 4주 전까지 ※ 검토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신기한 전까지 연장 가능
국토교통부 (항공안전정책과장)	우리나라 의견(별지 제2호서식)을 ICAO에 이메일로 제출 (담당부서장 및 주ICAO한국대표부 참조)	개정안 검토 의견 회신 기한까지
	SMIS내 해당 공한의 'Action Taken'란에 해당 공한에 대한 조치 결과 입력 및 최종 검토 결과*는 '붙임'으로 등록 *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	개정안 검토 의견 회신 기한까지